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터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95-111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16.(목)	2026.08.27.(목)	2026.09.01.(화)	2026.09.04.(금)	2026.09.08.(화)~2026.09.09.(수)	2026.09.11.(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7.(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3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8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급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9.01.(화)	2026.09.04.(금)	2026.09.08.(화)~2026.09.09.(수)	2026.09.11.(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04.)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과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27층 21개동 총 2,016세대 중 일반분양 1,139세대 중 잔여 430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수
2026910223	01	038.0314A	38A	3	101	701,801,803
			38A-1	10	201	1904,1905,2004,2005,2104,2105,2204,2205,2304,2404
	02	046.9070A	46A	2	101	408,608
			46A-1	2	201	2107,2203
	03	074.9730A	74A	6	105	302,501,502,801,901,1802
				9	106	102,202,203,302,402,403,503,1002,2402
			74A-1	6	204	202,203,301,504,604,1102
				1	207	501
	04	074.9705B	74B	22	106	201,301,404,501,504,601,801,804,901,1104,1301,1404,1501,1504,1604,1701,1804,1904,2104,2401,2501,2504
			74B-1	10	204	105,205,405,905,1205,1405,1505,1805,2305,2605
	05	084.9692A	84A	24	102	101,104,201,203,205,401,403,501,504,601,603,701,703,704,705,903,1004,1101,1104,1203,1303,1304,1401,1504
				6	103	103,203,403,903,1003,1303
				5	104	303,403,503,603,703
				5	107	203,303,304,403,604
				12	108	101,102,202,302,401,402,502,503,603,703,802,903
				9	109	102,301,302,401,601,602,801,902,1802
				14	110	202,205,303,305,403,405,503,505,602,603,605,803,905,1703
			84A-1	9	202	103,203,205,302,303,305,403,805,901
				9	203	101,201,203,204,304,403,504,704,1101
				9	205	201,203,303,403,504,601,703,801,901
				12	206	104,202,302,403,404,503,504,603,704,802,803,2602
				1	207	403
				9	208	103,203,204,304,401,403,404,503,504
				9	209	103,203,204,301,304,404,503,801,804
				9	211	103,104,203,204,304,403,404,603,903
	06	084.9734B	84B	10	103	202,302,402,502,602,702,802,902,1302,1402
				9	104	301,501,601,801,901,1001,1201,1301,1401
	07	084.9704C	84C	10	102	202,302,402,702,902,1002,1302,1402,1602,1702
				9	103	201,301,401,501,601,901,1101,1201,1301
				12	104	202,302,402,602,802,902,1002,1102,1302,1402,1802,1902
				6	108	304,404,1004,1304,1504,2504

			84C-1	11	110	201,301,401,501,601,701,801,1101,1501,1901,2301
				5	202	104,204,304,2004,2104
				7	203	102,202,302,602,1002,1902,2202
				6	205	202,302,402,602,702,1302
				14	206	201,301,401,501,601,701,1001,1201,1301,1701,1801,1901,2001,2101
				14	207	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804,1904,2004,2304
				6	208	102,202,302,402,1102,1202
				5	209	202,302,402,1102,1202
	08	101.9695A	101A	8	103	104,105,204,205,305,404,405,504
				5	104	304,305,404,605,1804
				3	110	304,604,1004
			101A-1	6	210	203,301,302,303,305,1901
				2	211	102,502
	09	101.9772B	101B	35	107	201,202,301,302,401,402,501,502,601,602,701,702,801,901,902,1001,1002,1101,1102,1201,1202,1301,1302,1401,1501,1502,1601,1602,1701,1801,1802,1901,1902,2001,2002
			101B-1	9	210	204,304,404,504,604,704,804,1104,1204
				22	211	201,301,401,501,601,701,901,1001,1101,1201,1301,1401,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10	136.5534A	136A	1	102	1703
				1	110	2303
			136A-1	1	205	1604
합계				430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 클럽(보육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약식 표기

구분	38.0314A	46.9070A	74.9730A	74.9705B	84.9692A	84.9734B	84.9704C	101.9695A	101.9772B	136.5534A
약식 표기	38A	46A	74A	74B	84A	84B	84C	101A	101B	136A
	38A-1	46A-1	74A-1	74B-1	84A-1	-	84C-1	101A-1	101B-1	136A-1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약식표기	동/라인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격 (VAT포함)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7-02-01	2027-07-01	2028-01-03	2028-07-03	2028-11-01	2029-03-02	
38.0314A	38A	101동1호 3,호	5-12층	3	77,585,000	185,415,000	-	263,000,000	10,000,000	3,15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92,050,000
	38A-1	201동4호 5호	13-20층	4	79,148,500	189,151,500	-	268,300,000	10,000,000	3,415,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93,905,000
	38A-1		21-27층	6	79,945,000	191,055,000	-	271,000,000	10,000,000	3,55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94,850,000
46.9070A	46A	101동 8호	4층	1	95,757,000	228,843,000	-	324,600,000	10,000,000	6,23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113,610,000
	46A		5-12층	1	97,645,000	233,355,000	-	331,000,000	10,000,000	6,55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115,850,000
	46A-1	201동 3호 7호	21-27층	2	100,270,500	239,629,500	-	339,900,000	10,000,000	6,995,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18,965,000
74.9730A	74A	105동 1호 2호 106동2호3호	1층	1	141,364,000	337,836,000	-	479,200,000	10,000,000	13,96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67,720,000
			2층	2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3층	2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4층	2	150,509,000	359,691,000	-	510,200,000	10,000,000	15,51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78,570,000
			5-12층	6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13-20층	1	155,052,000	370,548,000	-	525,600,000	10,000,000	16,28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83,960,000
			21-27층	1	156,586,000	374,214,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85,780,000
	74A-1	204동 1호 2호 3호 4호 207동1호	2층	2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3층	1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5-12층	4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74.9705B	74B	106동 1호 4호	2층	1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3층	1	144,491,000	345,309,000	-	489,800,000	10,000,000	14,49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71,430,000
			4층	1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5-12층	7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층	8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층	4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74B-1	204동 5호	1층	1	138,384,500	330,715,500	-	469,100,000	10,000,000	13,455,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164,185,000
			2층	1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4층	1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5-12층	2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층	3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층	2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84.9692A	84A	102동 1호 3호 4호 103동3호 104동3호 107동3호4호 108동1호2호3호 109동1호2호 110동2호3호5호	1층	6	163,105,500	389,794,500	-	552,900,000	10,000,000	17,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2층	8	169,153,000	404,247,000	-	573,400,000	10,000,000	18,67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200,690,000
			3층	8	170,038,000	406,362,000	-	576,400,000	10,000,000	18,82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201,740,000
			4층	10	173,489,500	414,610,500	-	588,100,000	10,000,000	19,405,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205,835,000
			5-12층	36	176,941,000	422,859,000	-	599,800,000	10,000,000	19,99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09,930,000
			13-20층	7	178,652,000	426,948,000	-	605,600,000	10,000,000	20,28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211,960,000
	84A-1	202동 1호 3호 5호 203동1호3호4호 205동1호3호4호 206동2호3호4호 207동3호 208동1호3호4호 209동3호4호 211호3호4호	1층	7	163,105,500	389,794,500	-	552,900,000	10,000,000	17,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2층	14	169,153,000	404,247,000	-	573,400,000	10,000,000	18,67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57,340,000	200,690,000
			3층	10	170,038,000	406,362,000	-	576,400,000	10,000,000	18,82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57,640,000	201,740,000
			4층	12	173,489,500	414,610,500	-	588,100,000	10,000,000	19,405,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205,835,000
			5-12층	23	176,941,000	422,859,000	-	599,800,000	10,000,000	19,99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09,930,000
			21-27층	1	180,392,500	431,107,500	-	611,500,000	10,000,000	20,575,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214,025,000
84.9734B	84B	103동 2호 104동1호	2층	1	161,984,500	387,115,500	-	549,100,000	10,000,000	17,455,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192,185,000
			3층	2	162,840,000	389,16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4층	1	166,262,000	397,338,000	-	563,600,000	10,000,000	18,18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197,260,000
			5-12층	11	169,684,000	405,516,000	-	575,200,000	10,000,000	18,76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57,520,000	201,320,000
			13-20층	4	171,395,000	409,605,000	-	581,000,000	10,000,000	19,05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203,350,000
84.9704C	84C	102동 1호 2호 3호 103동1호 104동2호 108동4호 110동1호	2층	4	168,150,000	401,850,000	-	570,000,000	10,000,000	1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99,500,000
			3층	5	169,035,000	403,965,000	-	573,000,000	10,000,000	18,65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00,550,000
			4층	5	172,516,000	412,284,000	-	584,800,000	10,000,000	19,24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204,680,000
			5-12층	19	175,997,000	420,603,000	-	596,600,000	10,000,000	19,83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208,810,000
			13-20층	13	177,737,500	424,762,500	-	602,500,000	10,000,000	20,125,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210,875,000
	84C-1	202동 4호 203동4호 205동2호 206동1호 207동4호 209동2호	21-27층	2	179,478,000	428,922,000	-	608,400,000	10,000,000	20,42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212,940,000
			1층	3	162,043,500	387,256,500	-	549,300,000	10,000,000	17,465,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192,255,000
			2층	6	168,150,000	401,850,000	-	570,000,000	10,000,000	1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99,500,000
			3층	6	169,035,000	403,965,000	-	573,000,000	10,000,000	18,65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00,550,000
			4층	5	172,516,000	412,284,000	-	584,800,000	10,000,000	19,24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58,480,000	204,680,000
			5-12층	21	175,997,000	420,603,000	-	596,600,000	10,000,000	19,83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208,810,000
			13-20층	12	177,737,500	424,762,500	-	602,500,000	10,000,000	20,125,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210,875,000
			21-27층	4	179,478,000	428,922,000	-	608,400,000	10,000,000	20,42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212,940,000
101.9695A	101A	103동 4호 5호 104동4호5호 110동4호	1층	2	192,074,500	417,295,910	41,729,590	651,100,000	10,000,000	22,555,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227,885,000
			2층	2	199,272,500	432,934,090	43,293,410	675,500,000	10,000,000	23,775,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236,425,000
			3층	4	200,305,000	435,177,270	43,517,730	679,000,000	10,000,000	23,95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37,650,000

			4층	3	204,405,500	444,085,910	44,408,590	692,900,000	10,000,000	24,645,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242,515,000
			5-12층	4	208,535,500	453,058,640	45,305,860	706,900,000	10,000,000	25,345,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247,415,000
			13-20층	1	210,571,000	457,480,910	45,748,090	713,800,000	10,000,000	25,69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249,830,000
	101A-1	210동 1호 3호 211동2호	1층	1	192,074,500	417,295,910	41,729,590	651,100,000	10,000,000	22,555,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227,885,000
			2층	1	199,272,500	432,934,090	43,293,410	675,500,000	10,000,000	23,775,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236,425,000
			3층	4	200,305,000	435,177,270	43,517,730	679,000,000	10,000,000	23,95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37,650,000
			5-12층	1	208,535,500	453,058,640	45,305,860	706,900,000	10,000,000	25,345,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70,690,000	247,415,000
			13-20층	1	210,571,000	457,480,910	45,748,090	713,800,000	10,000,000	25,69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249,830,000
101.9772B	101B	107동 1호 2호	2층	2	197,030,500	428,063,180	42,806,320	667,900,000	10,000,000	23,395,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233,765,000
			3층	2	198,063,000	430,306,360	43,030,640	671,400,000	10,000,000	23,57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234,990,000
			4층	2	202,163,500	439,215,000	43,921,500	685,300,000	10,000,000	24,265,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239,855,000
			5-12층	15	206,293,500	448,187,730	44,818,770	699,300,000	10,000,000	24,965,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244,755,000
			13-20층	14	208,329,000	452,610,000	45,261,000	706,200,000	10,000,000	25,31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247,170,000
	101B-1	210동 4호 211동1호	2층	2	197,030,500	428,063,180	42,806,320	667,900,000	10,000,000	23,395,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233,765,000
			3층	2	198,063,000	430,306,360	43,030,640	671,400,000	10,000,000	23,57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234,990,000
			4층	2	202,163,500	439,215,000	43,921,500	685,300,000	10,000,000	24,265,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68,530,000	239,855,000
			5-12층	13	206,293,500	448,187,730	44,818,770	699,300,000	10,000,000	24,965,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244,755,000
			13-20층	7	208,329,000	452,610,000	45,261,000	706,200,000	10,000,000	25,31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70,620,000	247,170,000
			21-27층	5	210,394,000	457,096,360	45,709,640	713,200,000	10,000,000	25,66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71,320,000	249,620,000
136.5534A	136A	102동 3호	17층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110동 3호	23층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136A-1	205동 4호	16층	1	443,503,000	963,542,730	96,354,270	1,503,400,000	10,000,000	65,17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150,340,000	526,190,000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4.(금) ~ 2026.09.13.(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9.0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기간 내 진행될 예정이며, 반드시 서류접수 시간 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제출 기간	장소
무순위 당첨자 서류제출	2026.09.08.(화)~2026.09.09.(수)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건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2026.08.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_방문시 작성
	○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_방문시 작성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약 등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혼인사실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정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2026.09.11.(금)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2026.08.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계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2026.08.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본인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대리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대리인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표 수납 및 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204-914577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상기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등을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원)				
주택형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6.9070A	11,000,000	1,100,000	9,900,000	
74.9730A	17,400,000	1,740,000	15,660,000	
74.9705B	17,400,000	1,740,000	15,660,000	
84.9692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9734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9704C	20,000,000	2,000,000	18,000,000	
101.9695A	23,600,000	2,360,000	21,240,000	
101.9772B	23,600,000	2,360,000	21,240,000	
136.5534A	32,200,000	3,220,000	28,980,000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우리은행	1005-804-938397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건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및 가전옵션-유상)
 • 기타 유상옵션 및 유상 가전 옵션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6.) 내용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유상옵션 및 유상 가전 옵션 계약일은 추후 계약자 대상으로 통보 예정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사업조건, 인근 제반여건 등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6.) 내용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청약 및 계약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사항은 계약자 본인의 과실임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분양보증 주요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6.07.16.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상호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길 49, 302호 (회원동, 삼성메르빌아파트상가 3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사업자등록번호	608-82-12801	114-81-04605

■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운영시간	10:00 ~ 17:00
	분양문의	055-295-1117
	공식홈페이지	https://cw-thehue.com
현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대		